

##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8. 31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8.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1. 9. 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최종화)

#### 제안이유

-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공급단가 462.4, 판매단가 372.8)에 따른 요금 인상과, 누수로 인한 주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용에 한하여 감면하였던 것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 자동납부 수용가 확보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실시와 불합리한 점을 보안 개선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건축물 멸실이나 가구수 변동 등에 따른 신고사항을 추가 신설함(안 제18조)

-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따라 2002년도에 평균 13.7% 인상하여 공급단가 대비 판매단가의 현실화율이 90%로 조정하고 가정용의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며 옥탕2종을 폐지하고 영업용에 통합함(안 별표 2)
- 누수요금감면을 가정용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요금부담을 경감함(안 제28조)
- 사용수량 인정 부과시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 조정함(안 제29조)
-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36조)
  - 급수관 구경이 40m/m 미만 3,000원 → 5,000원
  - 급수관 구경이 40m/m 이상 6,000원 → 10,000원
-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의 월 사용요금 중 1% 범위 안에서 감면(안 제37조)
- 상수도요금 이의신청기간을 10일에서 60일로 연장조정함(안 제44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할 때 시장에게 신고토록 조례를 신설하는 이유는?	○ 건축물 멸실시 계량기 관리소홀로 땅에 묻어버림으로 인하여 요금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규제코자 하는 것임
○ 건축물 멸실신고시 주민에게 비용 부담이 있는가?	○ 없음
○ 누수요금 감면을 가정용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 영업용, 업무용 등 누수시 요금부담이 커 민원발생 요지를 줄이고 요금부담을 줄여 주기 위함임
○ 옥탕, 영업용을 누수시 감면해주면 시에 손실이 많을 텐데 굳이 전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 옥탕은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영업용 누수시 민원이 있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임
○ 요금 자동납부시 1%를 감면해주고자 하는데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시 손실액은?	○ 자동납부를 약 8,500건으로 봤을때 6백만원 정도 손실이 있으나, 현재 징수율이 84.2%에서 96.4%로 높아지기 때문에 손실로 보기는 어려움
○ 가스사용료 등도 자동납부시 감면해주고 있는가?	○ 가스 등도 1% 감면해주고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0호
의결년월일	제90회 (2001. 9. 8)

제출년월일 : 2001. 8. 3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공급단가 462.4, 판매단가 372.8)에 따른 요금 인상과, 누수로 인한 주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용에 한하여 감면하였던 것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 자동납부 수용가 확보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실시와 불합리한 점을 보안 개선하기 위함

주요골자

- 건축물 멸실이나 가구수 변동 등에 따른 신고사항을 추가 신설함(안 제18조)
-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따라 2002년도에 평균 13.7% 인상하여 공급단가대비 판매단가의 현실화율이 90%로 조정하고 가정용의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며 욕탕2종을 폐지하고 영업용에 통합함(안 별표 2)
- 누수요금감면을 가정용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요금부담을 경감함(안 제28조)
- 사용수량 인정 부과시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 조정함(안 제29조)
-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36조)
  - 급수관 구경이 40m/m 미만 3,000원 → 5,000원
  - 급수관 구경이 40m/m 이상 6,000원 → 10,000원
-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의 월 사용요금 중 1% 범위 안에서 감면(안 제37조)
- 상수도요금 이의신청기간을 10일에서 60일로 연장조정함(안 제44조)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때
- 7.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28조제1항 중 “다만 가정용으로서”를 “다만”으로 하고 “최종단계”를 “정상적인 요금부과단계”로 하며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되, 산정요금이 처음 부과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초금액을 적용한다.”를 “가정용에는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업종은 2단계 요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하고 “5일 간”을 “5일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제5호가목 중 “3,000원”을 “5,000원”으로 나목중 “6,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수용가는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제1항 중 “10일”을 “60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2]

업종별요율표

(단위 : m<sup>3</sup>/원)

계량기구경별정액요금		업종별 사용량·요금		
계량기구경별	요금	업종별	사용구분	
13m/m	600	가정용	0 ~ 20 이하	280
20m/m	1,300		20 초과 ~ 30 이하	450
25m/m	2,010		30 초과	720
32m/m	3,590	업무용	0 ~ 20 이하	420
40m/m	4,900		20 초과 ~ 50 이하	510
50m/m	8,590		50 초과 ~ 100 이하	600
75m/m	16,270		100 초과 ~ 300 이하	680
100m/m	27,120	영업용	300 초과	780
150m/m	60,220		0 ~ 30 이하	690
200m/m	97,000		30 초과 ~ 50 이하	870
250m/m	143,870	대중탕용	50 초과 ~ 100 이하	1,060
300m/m	200,830		100 초과	1,410
350m/m	251,580		0 ~ 1,000 이하	470
400m/m	282,910	1,000 초과 ~ 1,500 이하	560	
		1,500 초과 ~ 2,000 이하	660	
		2,000 초과	760	

“별지”

[별표 3]

##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10제곱미터 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li> <li>○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li> <li>○ 기숙사</li> </ul>
업무용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li> <li>○ 사설소화전</li> <li>○ 관공서, 의료기관, 병영, 학교</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li> <li>○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자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li> </ul>
영업용 (03)	<p>①식품접객업소 ②공연장 ③숙박업(여인숙 제외) ④유기장, 노래방 ⑤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⑥자동차정비업(카센터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운송(창고보관업 포함) 또는 관광업 ⑦음식장 ⑧사설학원(개인지도, 교습소 제외) ⑨사진현상소 ⑩양조업 ⑪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도금업 ⑫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⑬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⑭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⑮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요율 적용) ⑯정육점 ⑰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포함) ⑱특수목욕장업(업태구분은 허가기준) ⑲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⑳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p>
대중탕용 (04)	일반목욕장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손괴자, 원인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5.(생략)</p> <p>(신설)</p> <p>(신설)</p> <p>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p> <p>②(생략)</p>	<p>제18조(신고) ①.....</p> <p>.....</p> <p>.....</p> <p>1.~5.(현행과 같음)</p> <p>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할 때</p> <p>7.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p> <p>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p> <p>②(현행과 같음)</p>
<p>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가정용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누수의 경우에는 4개월 평균량은 요금의 최종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1단계의 요금을 적용하되, 산정요금이 처음 부과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초금액을 적용한다.</p> <p>②~⑤(생략)</p>	<p>제28조(요금의 조정) ①.....</p> <p>.....</p> <p>..... 다만.....</p> <p>.....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p> <p>..... 가정용에는 1단계의 요금을 적용하며 그 외의 업종은 2단계 요금을 적용한다.</p> <p>②~⑤(현행과 같음)</p>
<p>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생략)</p> <p>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p> <p>③(생략)</p>	<p>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현행과 같음)</p> <p>②.....</p> <p>..... 4개월.....</p> <p>..... 5일 이상.....</p> <p>.....</p> <p>③(현행과 같음)</p>
<p>제36조(제수수료) (생략)</p> <p>1.~4. (생략)</p> <p>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p> <p>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3,000원</p> <p>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6,000원</p>	<p>제36조(제수수료)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p> <p>가. .... 5,000원</p> <p>나. .... 10,000원</p>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③(생략)</p>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③(현행과 같음)</p>

<p>(시설)</p> <p>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생략)</p>	<p>④상수도 요금 자동납부 수용기는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44조(이의신청) ①..... ..... .....60일..... .....</p> <p>②(현행과 같음)</p>
--	---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단위 : m<sup>3</sup>, 원)

현행					개정안				
계량기구경별징액요금		업종별사용량요금							
계량기구경별	요금	업종별	사용량	요금					
13m/m	600	가정용	1~10	210	.....	.....	.....	0~20 이하	280
			11~20	280				20 초과~30 이하	450
			21~30	380				30 초과	720
			31~40	550					
			41~50	710					
25m/m	2,010		51 이상	890			0~20 이하	420	
32m/m	3,590	업무용	1~20	350	.....	.....	.....	20 초과~50 이하	510
			21~50	440				50 초과~100 이하	600
			51~100	520				100 초과~300 이하	680
			101~300	590				300 초과	780
75m/m	16,270		301 이상	670					
100m/m	27,120	영업용	1~30	600	.....	.....	.....	0~30 이하	690
			31~50	770				30 초과~50 이하	870
			51~100	940				50 초과~100 이하	1,060
200m/m	97,000		101 이상	1,320			100 초과	1,410	
250m/m	143,870	1종	1~200	330	.....	.....	.....	0~1,000 이하	470
			201~300	380				1,000 초과~1,500 이하	560
			301~500	560				1,500 초과~2,000 이하	660
			501 이상	650				2,000 초과	760
300m/m	200,830	2종	1~200	700	.....	.....	.....		
			201~300	1,070					
			301~500	1,790					
			501 이상	2,400					

